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21호 2011. 3. 14.(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21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2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3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범위를 지방세법 제56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인용조문 정리(안 제2조제1항제3호)
-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하여 취득일 혼선방지를 위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에서 납세의무성립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촉탁교부금 용어를 징수촉탁수수료로 통일(안 제3조제1항제7호)
-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방법 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개정조항 정리(안 제6조제3항)
- 세입징수포상금 환수 이자율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지방세기본

법시행령 제65조로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제3항)

- 별지 제3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란을 1년차분과 2년차이상**으로 구분
(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3.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213, www.yeonsu.go.kr/ 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세법 제56조의” 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 을 “납세의무성립일” 로 하며, 동조 제1항제7호중 “징수촉탁교부금” 를 “징수촉탁수수료” 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분기징수포상금신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세 무 과 장

발신 : 동장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상금	비 고
		세 액	가산금	계		
과년도채납 징수액	1년차분					
	2년차이상					
숨은 세원 발굴	과 표 초 과					
	미 등 기					
	등 기 1년 경 과					
계						

첨부 :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범위) ① (생 략) 1. ~ 2. (생 략) 3. <u>지방세법 제56조의</u>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생 략)</p> <p>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1. ~ 4. (생 략) 5. <u>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u>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입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6. 삭제 7.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u>징수촉탁교부금</u>의 100분의10 ② (생 략)</p>	<p>제2조(지급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u>----- -----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납세의무성립일</u>----- ----- ----- 6. (현행과 같음) 7.----- ----- ----- <u>징수촉탁수수료</u>의 -- --- 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포상금 지급)</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u>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7조(환수)</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u>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u>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p>	<p>제6조(포상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u>----- ----- ----- -----</p> <p>제7조(환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지</u> <u>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u> ----- -----</p>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